

# 파주금촌 금호어울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추가 임차인 모집공고

##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이 주택은 (주)대한제29호파주금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거하여 임대사업자로서 10년 이상을 임대할 목적으로 임차인을 모집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 이상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이 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매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추가 임차인 모집은 임차인 모집공고일[2025.09.05.(금)] 기준으로 진행하며, 이는 청약자격 조건(청약신청자 나이, 국적, 무주택자격요건 등)의 판단 기준일입니다.
- 이 주택은 각 공급유형(특별공급/일반공급)과 타입에 관계없이 세대당 1건(세대주 혹은 세대원 중 1인)만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세대당 2건 이상 혹은 1인 2건 이상 청약당첨 시 청약신청 및 당첨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계약 체결 이후 전산검색 및 관련 행정기관 증빙서류 확인결과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받을 경우 계약은 무효화되며, 해당 동호수는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됨을 알려드립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일정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의거 임대보증금보증의 대상이며,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우선 가입하고, “임차인”은 보증수수료의 100분의 25를 “임대인”이 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추가 임차인 모집공고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당 사업 최초 임차인 모집공고문[2025.06.25.(수)]을 따릅니다.
- 기계약자 및 그 세대 구성원은 금번 청약접수 및 계약이 불가 합니다.
- 파주금촌 금호어울림 내 상담전화(☎ 031-957-8005)를 통해 임차인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임차인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잔여세대 공급내역

■ 금회 공급대상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850세대 중 잔여 368세대 (특별공급 87세대, 일반공급 281세대)

(단위 : m<sup>2</sup>, 세대)

주택형 (타입)	세대별 계약면적(m <sup>2</sup> )					금회 공급 세대수			입주예정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계약면적	특별공급 청년	일반공급	계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공급면적						
26A	26.9146	11.8217	38.7363	23.9559	62.6923	87	-	87	2025년 11월
26B	26.9146	11.8217	38.7363	23.9559	62.6923	-	200	200	
46	46.7967	19.5678	66.3645	41.6525	108.0169	-	72	72	
59A	59.8551	25.2298	85.0849	53.2754	138.3603	-	-	-	
59B	59.8387	26.0643	85.9030	53.2608	139.1638	-	9	9	
합계	-	-	-	-	-	87	281	368	

- 동일 타입 내 공급 구분의 차이를 위하여 26A(특별공급), 26B(일반공급)로 구분하였으며, 기타 안내 및 주택홍보관 및 공급안내문 외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공급유형별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단위 : 원, 세대)

공급유형	주택형 (타입)	임대조건	임대보증금/납입시점			월임대료 (전층)	금회 공급 세대수
			총액	계약금(계약시)	잔금(입주시)		
특별공급 (청년)	26A	표준형	10,000,000	1,000,000	9,000,000	355,000	87세대
		선택형1	3,000,000	300,000	2,700,000	385,000	
		선택형2	35,000,000	3,500,000	31,500,000	247,000	
일반공급	26B	표준형	25,000,000	2,500,000	22,500,000	365,000	200세대
		선택형1	15,000,000	1,500,000	13,500,000	408,000	
		선택형2	45,000,000	4,500,000	40,500,000	278,000	
	46	표준형	69,000,000	6,900,000	62,100,000	425,000	72세대
		선택형1	83,000,000	8,300,000	74,700,000	370,000	
		선택형2	105,000,000	10,500,000	94,500,000	284,000	
	59A	표준형	89,000,000	8,900,000	80,100,000	497,000	-
		선택형1	120,000,000	12,000,000	108,000,000	381,000	
		선택형2	145,000,000	14,500,000	130,500,000	287,000	
	59B	표준형	89,000,000	8,900,000	80,100,000	497,000	9세대
		선택형1	120,000,000	12,000,000	108,000,000	381,000	
		선택형2	145,000,000	14,500,000	130,500,000	287,000	

- 자세한 임대조건 및 공급 유형별 자격요건은 최초 임차인모집공고[2025.06.25.(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 ■ 공급 유형별 청약 신청자격 및 선정방법

모집분야	자격요건	선정방법
특별공급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차인 모집공고일[2025.09.05.(금)] 현재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무주택자로서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li> <li>가) 연령 : 만 19세 이상이면서 만 39세 이하일 것(임차인 모집공고일 기준)</li> <li>나) 혼인 : 혼인 중이 아닐 것</li> <li>다) 소득 :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라 한다)의 120% 이하일 것</li> <li>②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부모의 월 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별공급 청약 신청자 전부를 대상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요건 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합니다.</li> <li>-1순위 :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li> <li>-2순위 :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10퍼센트 이하</li> <li>-3순위 :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li> </ul>
일반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차인 모집공고일[2025.09.05.(금)] 현재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무주택세대구성원(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li> <li>청약통장 가입여부, 소득 및 자산보유액, 거주지역 등에 관계 없이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단, 계약자는 임차인 모집공고일[2025.09.05.(금)]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기준시점부터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추첨을 통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li> </ul>

### ■ 특별공급(청년) 소득 기준 산정

(단위 : 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100% 이하	3,598,164	5,477,003	7,626,973	8,578,088	9,031,048	9,733,086	10,435,124	11,137,162
110% 이하	3,957,980	6,024,703	8,389,670	9,435,897	9,934,153	10,706,395	11,478,636	12,250,878
120% 이하	4,317,797	6,572,404	9,152,368	10,293,706	10,837,258	11,679,703	12,522,149	13,364,594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1인당 월평균 소득(702,038원)×(N-8)}

※1인당 월평균 소득은 100% 기준, N은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 자(만 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함)
- 월평균 소득은 연간소득 ÷ 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 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상의 과세 대상 급여액(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 대상 급여액(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 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 증명서상의 근무 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합니다.(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 수로 인정)

### ■ 주요 일정

구분	특별/일반공급 청약신청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정	2025.09.06.(토)~09.14.(일) 10:00~17:00	2025.09.16.(화) 14:00	2025.09.17.(수)~09.19.(금) 10:00~16:00
방법	주택홍보관 현장접수	사업주체 추첨 2025.09.16.(화) 11:00	주택홍보관 방문계약
장소	주택홍보관 (파주시 새꽃로 173)	홈페이지 ( <a href="https://pjkhapt.com">https://pjkhapt.com</a> )	주택홍보관 (파주시 새꽃로 173)

- 청약은 주택홍보관에서 현장접수로 이루어지며 자격확인서류를 청약접수 시 함께 접수하오니 유의 바랍니다.
- 당첨자 동·호수 배정은 추첨 전문업체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결정됩니다.
- 임차인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형별 잔여 세대수의 5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 계약 후 잔여 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 동·호수 추첨 및 계약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청약신청 및 자격확인 구비서류

(1) 특별공급(청년) 청약 시 구비서류

구분	필수	추가	제출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 서류	○		무주택 서약서	본인	·무주택요건 확약 및 서약(접수장소 비치)
	○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인감도장	본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수임인 인적사항 기재하여 발급)
	○		신분증	본인	·본인 확인용(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본인, 세대원 성명 및 주민번호 전체,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본인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혼인여부 확인용. "상세"로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세대원 전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		소득증빙서류	세대원 전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한 자료(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발급)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자녀를 임신중인 경우 작성(접수장소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출
		○	이혼사실확인서	본인	·이혼하여 혼인 중이 아닌 경우(접수장소 비치)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세대원	·무직자인 경우 또는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접수장소 비치)	
본인 소득 없는 경우 (추가)	○		무소득사실증명원	본인	·본인 소득 없음 확인용. 국세청 홈텍스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모	·본인이 소득이 없고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부모 서류 제출
	○		소득증빙서류	부모	·본인이 소득이 없고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부모 서류 제출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		위임장	-	·접수장소 비치
	○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인감도장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수임인 인적사항 기재하여 발급)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본인 확인, 서명 가능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
해당자		○	무주택 소명서류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필요서류 제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 건물 확인서 -기타 무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일반공급 청약 시 구비서류

구분	필수	추가	제출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 서류	○		무주택 서약서	본인	·무주택요건 확약 및 서약(접수장소 비치)
	○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인감도장	본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수임인 인적사항 기재하여 발급)
	○		신분증	본인	·본인 확인용(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본인, 세대원 성명 및 주민번호 전체,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본인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제출 (배우자 본인, 세대원 성명 및 주민번호 전체,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배우자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 신청 불가)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		위임장	-	·접수장소 비치
	○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인감도장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수임인 인적사항 기재하여 발급)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본인 확인, 서명 가능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
해당자		○	무주택 소명서류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필요서류 제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 건물 확인서 -기타 무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 상기 구비서류는 추가 임차인 모집공고일[2025.09.05.(금)]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상기 구비서류 중 주민등록번호가 "\*"로 표시되어 발급된 서류는 무효이며, 추가 서류를 보완하셔야 합니다.
- 청약 신청 완료시 접수증을 발급해 드리며, 당첨자는 계약일에 지참하시어 주택홍보관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 합니다.

(3) 특별공급(청년)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재직증명서(출산휴가 및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출산휴가,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계속 휴직으로 월평균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 휴직 전 정상 재직기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 출산휴가 기간 중 고용보험을 수령한 경우 출산전후 급여신청(확인서)	㉠ 해당직장 ㉡ 해당직장/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 재직증명서 ㉡ 금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직인 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증명서(직인 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발급되지 않을 경우 전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본인의 근로(연봉)계약서를 제출받아 월 평균 소득을 추정	㉠,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 근로자	㉠ 재직증명서 ㉡ 전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 해당직장
	직장가입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안되는 경우	㉠ 재직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해당직장 ㉡ 세무서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공고일 이전 가입) 또는 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관리공단/세무서 ㉡ 세무서
	법인대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재무제표, ㉢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해당직장 ㉣ 세무서 ㉤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세무서 ㉡, ㉢ 해당직장
기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일용직 근로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금년도 신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및 위촉(해촉) 증명서	㉠ 해당직장/세무서 ㉡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주택홍보관 비치) ㉡ 사실증명원(소득세 신고사실 없음 확인) ※ 퇴직자의 경우 전년도부터 모집공고일까지의 모든 소득 서류	㉠ 접수장소 ㉡ 세무서

- 군 복무 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 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된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부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합니다.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임차인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임차인 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 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계약체결 구비서류

구분	필수	추가	제출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공동 서류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본인	·주택홍보관 내 계약금 수납 불가
	○		신분증	본인	·본인 확인용(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인감도장	본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수임인 인적사항 기재하여 발급)
공동 명의 신청 (추가)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공동명의자와의 관계 증빙 (공동명의는 임차인의 배우자, 자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부모로 한정함)
	○		신분증	공동명의자	·공동명의자 확인용(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각 1부
	○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인감도장	공동명의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수임인 인적사항 기재하여 발급) 등 각 1부
제3자 대리인 신청서 추가서류	○		위임장	-	·접수 장소 비치
	○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인감도장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수임인 인적사항 기재하여 발급)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본인 확인, 서명 가능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상기 구비서류는 추가 임차인 모집공고일[2025.09.05.(금)]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공동명의변경 접수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진행되며 정당계약 기간 이후에는 공동명의 변경이 불가합니다.
- 공동명의자는 임차인의 배우자, 자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부모로 한정하며, 공동명의자 전부는 관계 법령상 임차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임대보증금(계약금, 잔금)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명	납부계좌	예금주
계약금, 잔금	우리은행	1005-603-888365	(주)대한제29호파주금촌위탁관리부동산투자

- 무통장입금시 동, 호수를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 1011301홍길동)
- 상기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납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당사 홍보관에서는 대금을 수납하지 않으니 반드시 해당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당첨효력이 상실됩니다.
- 무통장 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무통장 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은 계약금 납부영수증으로 같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주요사항

■ 추가 임차인모집공고 상 명시되지 않은 세대 면적, 세부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 기타 내용은 최초 임차인 모집공고[2025.06.25.(수)]를 준용합니다.

■ 현장 위치 :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337-15번지 일원(금촌2동제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홍보관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새꽃로 173(금촌동)

■ 임대 및 계약문의 : ☎ 031-957-8005

■ 홈페이지 : <http://www.pjkhapt.com>

사업주체	시공회사	자산관리회사	자산보관회사
(주)대한제29호파주금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금호건설 주식회사	대한토지신탁(주)	엔에이치투자증권(주)